

# 전력기술관리법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안내

전력기술관리법개정(안)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- 공고번호 :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-202호
- 입법예고기간 : 2005. 8. 16 ~ 9. 5
- 관련문의 :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(Tel.02-2110-5475)
- 전문참고 : 산업자원부([www.mocie.go.kr](http://www.mocie.go.kr)/법령자료/입법예고)

## 1. 개정이유

공동주택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 선정, 감리원 배치신고 등 현행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 감리완료신고 제도를 도입하여,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부실공사 및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(시·도지사)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(PQ)을 적용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
- 나.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원 배치신고는 역무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사항인바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위임법리에 대한 논란을 방지
- 다. 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 및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업자 등은 감리용역완료시 감리완료보고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당해 감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감리완료필증을 발급토록 함
- 라.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계업·감리업의 등록변경신고중 단순 반복적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은 시·도지사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임·위탁 관련규정을 정비함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<b>제12조(공사감리등) ① ~ ⑥ (생략)</b>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12조(공사감리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b>  <u>⑦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 <u>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12조의2(감리원 배치신고 등) ①</b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감리업자 등”이라 한다)가 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전에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감리업자</li> <li>2.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감리를 하는 자</li> </ol> <p><u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등은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현황(변경배치현황을 포함한다)을 14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u>  <u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 등은 그가 시행한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</u></p>

현행	개정
<p>第14條(設計業・監理業의 登錄등)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 는 者는 그 營業의 種類別로 특별시 장・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 지사"라 한다)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 이 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1. 2. (생략) ② ~ ④ (생략)</p> <p>제26조(수수료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. ④시·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신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를 받은 때 에는 그 사실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하 며, 감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감리완료필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.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신 고,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 리완료보고서의 내용·제출방법 및 감 리원배치확인서·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령으로 정한다.</p> <p>第14條(設計業・監理業의 登錄등) ①----- ----- ----- 시·도지사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6조(수수료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</p>

현행	개정
<p>4.·5. (생략)</p> <p>제2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하여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감리원료필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이----- ----- -----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이 법에 의한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③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·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</li> <li>2.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의 발급</li> <li>3.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확인</li> <li>4. 제1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신고·감리원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·관리 및 감리원배치확인서·감리원료필증의 발급</li> <li>5.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·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(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)</li> </ol>

현행	개정
<p><b>제30조(과태료) ①(생략)</b>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·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</p> <p>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</p> <p><b>제32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)</b></p>	<p><b>제30조(과태료) ①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</p> <p>1.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</p> <p>2.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감리업자</p> <p>3.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</p> <p>4.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제3항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제4항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b>제32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)</b></p>

현행	개정
<p>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·직원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7조제3항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②(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③(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④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p>